

[시행일: 2021. 1. 16.] 제4호러목(법 제35조제5호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트목, 프목, 호목, 기목, 니목, 디목, 리목, 미목, 비목, 시목, 이목, 지목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없다.

1)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었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위반행위에 대하여 다목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 감경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도 감경되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총액은 제4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마. 제4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다목 또는 제3호에 따라 줄이지 않고 제4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다목 또는 제3호에 따라 줄인 후 과태료 금액이 100만원 미만이 된 경우에는 100만원으로 부과한다.

2. 특정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 또는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하여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발생원인 조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에서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그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제4호의 개별기준 중 3차 이상 위반 시의 금액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중대재해

나. 법 제4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중대산업사고

3. 사업장 규모 또는 공사 규모에 따른 과태료 감경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괄호 안의 공사금액)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제4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에 해당 목에서 규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한다.

가. 상시근로자 50명(10억원) 이상 100명(40억원) 미만: 100분의 90

나. 상시근로자 10명(3억원) 이상 50명(10억원) 미만: 100분의 80

다. 상시근로자 10명(3억원) 미만: 100분의 70

4.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0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관계수급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175조제4항제1호		1,000	1,000	1,000
나.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거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4항제2호		1,000	1,000	1,000
다.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호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500	500	500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300	400	500
라.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리감독자에게 직무와 관련된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호		300	400	500
마. 법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또는 제19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지 않거나	법 제175조제5항제1호	1)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500	500	500
		2) 선임된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300	400	500

이들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3)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500	500	500
		4) 선임된 보건관리자로 하여금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300	400	500
		5)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500	500	500
		6) 선임된 안전보건관리담당자로 하여금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300	400	500
	바. 법 제17조제3항, 제18조제3항 또는 제19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늘리지 않거나 교체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2호	500	500	500
	사. 법 제22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산업보건의 의무를 두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호	300	400	500
아. 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지 않은 경우(법 제75조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175조제5항제1호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법 제75조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한 경우는 제외한다)	500	500	500
		2) 제37조를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법 제75조에 따라 구성된 노사협의체를 포함한다)의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1회당)	50	250	500
자. 법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호	1) 사업주가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50	250	500
		2) 근로자가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	20	30
차. 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관리규	법 제175조제5항제1호		150	300	500

정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카. 법 제26조를 위반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거나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호		50	250	500
타.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호	1)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10	20	50
		2) 교육대상 관리감독자 1명당	50	250	500
파.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호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10	20	50
하. 법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2항제1호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50	100	150
거.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호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10	20	50
너. 법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으로 하여금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호	1) 법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500	500	500
		2)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100	200	500
	법 제175조제6항제1호	3) 법 제3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300	300	300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다. 법 제34조를 위반하여 법과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게시하지 않거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3호		50	250	500
러. 법 제35조를 위반하여 근로자대표의 요청 사항을 근로자대표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6항제2호		30	150	300
며. 법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표지를 설치·부착하지 않거나 설치·부착된 안전보건표지가 같은 항에 위배되는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호	1개소당	10	30	50
버. 법 제40조를 위반하여 조치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6항제3호		5	10	15
서. 법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4항제3호		300	600	1,000
어. 법 제42조제1항·제5항·제6항을 위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또는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결과서를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4항제3호	1) 법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또는 자체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법 제42조제5항을 위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그 심사결과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3) 법 제42조제6항을 위반하여 변경할 필요가 있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하여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 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했으나 갖추어 두지	1,000 300 1,000 300 1,000 300	1,000 600 1,000 600 1,000 6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않은 경우			
저. 법 제42조제2항을 위 반하여 자격이 있는 자 의 의견을 듣지 않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한 경우	법 제175조제6 항제4호		30	150	300
처. 법 제43조제1항을 위 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 우	법 제175조제6 항제5호		30	150	300
커. 법 제44조제1항 전단 을 위반하여 공정안전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 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4 항제3호		300	600	1,000
터. 법 제44조제2항을 위 반하여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시 산업안전보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 지 않거나 근로자대표 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 항제1호		50	250	500
퍼. 법 제45조제2항을 위반 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4 항제3호		100	250	500
허. 법 제46조제1항을 위반 하여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지키지 않은 경 우	법 제175조제4 항제3호	1) 사업주가 지키지 않은 경 우(내용 위반 1건당)	10	20	30
		2) 근로자가 지키지 않은 경 우(내용 위반 1건당)	5	10	15
고. 법 제46조제2항을 위반 하여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실제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고용노 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6 항제5호		30	150	300
노. 법 제47조제1항에 따 른 명령을 위반하여 안 전보건진단기관이 실시 하는 안전보건진단을	법 제175조제4 항제4호		1,000	1,000	1,000

받지 않은 경우						
도. 법 제47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보건진단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같은 항 후단을 위반하여 근로자대표가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참여시키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3항제1호	1)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500	1,500	1,500	
		2) 근로자대표를 참여시키지 않은 경우	150	300	500	
로.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4항제4호	1) 법 제4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않은 경우	500	750	1,000	
		2) 법 제4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않은 경우	1,000	1,000	1,000	
모. 법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거나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호		50	250	500	
보. 법 제50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호	1) 사업주가 준수하지 않은 경우	200	300	500	
		2) 근로자가 준수하지 않은 경우	5	10	15	
소. 법 제53조제2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명령받은 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4호		50	250	500	
오. 법 제54조제2항을 위반하여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175조제2항제2호	중대재해 발생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사업장 외 교통사고 등 사업주의 법 위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중대재해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한다)	3,000	3,000	3,000	
조. 법 제57조제3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를 보	법 제175조제3항제2호	1)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사업장 외 교통사	700	1,000	1,500	

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오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고 등 사업주의 법 위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산업재해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산업재해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500	1,500	1,500
초. 법 제6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호		500	500	500
코. 법 제66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도급인의 조치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호		150	300	500
토. 법 제66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도급인의 조치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호		150	300	500
포. 법 제67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4항제3호		1,000	1,000	1,000
호. 법 제68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호		500	500	500
구. 법 제70조제1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공사기간 연장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4항제3호		1,000	1,000	1,000
누. 법 제70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공사기간을 연장하지 않거나 건설공사발주자에게 그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4항제3호		1,000	1,000	1,000
두. 법 제71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설계를 변경하지 않거나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설계변경	법 제175조제4항제3호		1,000	1,000	1,000

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루. 법 제71조제4항을 위반하여 설계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4항제3호		1,000	1,000	1,000
무. 법 제72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지 않거나 일부만 계상한 경우	법 제175조제4항제3호	1) 전액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	계상하지 않은 금액 (다만, 1,000만원 초과할 경우 1,000만원)	계상하지 않은 금액 (다만, 1,000만원 초과할 경우 1,000만원)	계상하지 않은 금액 (다만, 1,000만원 초과할 경우 1,000만원)
		2) 50% 이상 100% 미만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	계상하지 않은 금액 (다만, 100만원 초과할 경우 100만원)	계상하지 않은 금액 (다만, 300만원 초과할 경우 300만원)	계상하지 않은 금액 (다만, 600만원 초과할 경우 600만원)
		3) 50% 미만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	계상하지 않은 금액 (다만, 100만원 초과할 경우 100만원)	계상하지 않은 금액 (다만, 200만원 초과할 경우 200만원)	계상하지 않은 금액 (다만, 300만원 초과할 경우 300만원)

부. 법 제72조제3항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4항제3호	1) 작성하지 않은 경우	100	500	1,000
		2) 공사 종료 후 1년간 보존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수. 법 제72조제5항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건설공사도급인만 해당한다)	법 제175조제4항제3호	1) 사용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1,000	1,000	1,000
		2) 사용한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목적 외 사용 금액 200	목적 외 사용 금액 250	목적 외 사용 금액 300
우. 법 제73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6항제6호				
주. 법 제75조제6항을 위반하여 노사협의체가 심의·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호	1) 건설공사도급인 또는 관 계수급인이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50	250	500
		2) 근로자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	20	30
추. 법 제7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4항제3호		500	700	1,000
쿠. 법 제77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호	1) 최초로 노무를 제공받았을 때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1인당)	10	20	50
		2)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1인당)	50	100	150
투. 법 제78조를 위반하여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4항제3호		500	700	1,000
푸. 법 제79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맹점의 안전·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을 마련·시행하지	법 제175조제2항제1호		1,500	2,000	3,000

않거나 가맹사업자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정 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 우					
후. 법 제82조제1항 전단 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않고 타워크레인을 설 치·해체한 경우	법 제175조제4 항제5호		500	700	1,000
그. 법 제84조제6항을 위 반하여 안전인증대상기 계등의 제조·수입 또 는 판매에 관한 자료 제출 명령을 따르지 않 은 경우	법 제175조제6 항제7호		300	300	300
느. 법 제85조제1항을 위 반하여 안전인증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안전인 증대상별)	법 제175조제4 항제3호		100	500	1,000
드. 법 제90조제1항을 위 반하여 자율안전확인표 시를 하지 않은 경우 (자율안전확인대상별)	법 제175조제5 항제1호		50	250	500
르. 법 제93조제1항 전단 을 위반하여 안전검사 를 받지 않은 경우(1대 당)	법 제175조제4 항제3호		200	600	1,000
르. 법 제94조제2항을 위 반하여 안전검사합격증 명서를 안전검사대상기 계등에 부착하지 않은 경우(1대당)	법 제175조제5 항제1호		50	250	500
브. 법 제95조를 위반하여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한 경우(1대당)	법 제175조제4 항제3호	1)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안 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 한 경우	300	600	1,000
		2)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안 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 한 경우	300	600	1,000
스. 법 제99조제2항을 위 반하여 자율검사프로그 램의 인정이 취소된 안	법 제175조제4 항제3호		300	600	1,000

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한 경우(1대당)					
으. 법 제10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작업장 내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를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4항제3호		1,000	1,000	1,000
즈. 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6항제8호		30	150	300
츠. 법 제108조제5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기록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6항제3호		30	150	300
크. 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조사 결과 및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6항제8호		300	300	300
트. 법 제1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 화학물질의 명칭·함유량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1종당)	법 제175조제5항제5호	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가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가 변경 사항을 반영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100 100 50	200 200 100	500 500 500
프. 법 제110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국외제조	법 제175조제5항제6호		500	500	500

자료부터 물질안전보건 자료에 적힌 화학물질 외에는 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 하는 화학물질이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 1종당)					
호. 법 제1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 물질 1종당)	법 제175조제5 항제7호	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 질을 양도·제공하는 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 하지 않은 경우(제공하지 않은 사업장 1개소당)			
		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 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 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0	200	500
		나) 종전의 물질안전보건자 료대상물질 양도·제공 자료부터 물질안전보건 자료를 제공받지 못하여 상대방에게 물질안전보 건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10	20	50
		2)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사 항을 잘못 작성하여 제공한 경우(제공한 사업장 1개소 당)			
		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 재사항을 거짓으로 작성 하여 제공한 경우	100	200	500
		나) 과실로 잘못 작성하거 나 누락하여 제공한 경우	10	20	50
기. 법 제111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물질 안전보건자료의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제공	법 제175조제6 항제9호	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 질을 제조·수입한 자가 변경사항을 반영한 물질 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지	50	100	300

하지 않은 경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1종당)		않은 경우(제공하지 않은 사업장 1개소당)			
		2) 종전의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양도·제공자로부터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지 못하여 상대방에게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제공하지 않은 사업장 1개소당)	10	20	30
나. 법 제112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않고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자료로 적은 경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1종당)	법 제175조제5항제8호	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가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100	200	500
		2)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승인 결과를 거짓으로 적용한 경우	500	500	500
		3)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수입한 자가 승인의 유효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대체자료가 아닌 명칭 및 함유량을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100	200	500
디. 법 제112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비공개 승인 또는 연장승인 신청 시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보호사유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신청한 경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1종당)	법 제175조제5항제9호		500	500	500
리. 법 제112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위반하여 대체자료로 적힌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0호		100	200	500
미. 법 제113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로서 같은	법 제175조제5항제11호		500	500	500

항 각 호의 업무를 거짓으로 수행한 경우 비. 법 제113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수입하는 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경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1종당)	법 제175조제5항제12호		100	200	500
시. 법 제1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지 않거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1종당)	법 제175조제5항제3호	1) 작성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지 않거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작업장 1개소당) 2)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지 않거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작업장 1개소당) 3)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 또는 제공한 자로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지 못하여 게시하지 않거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작업장 1개소당)	100	200	500
			100	200	500
			10	20	50
이. 법 제114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6항제10호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50	100	300
지. 법 제115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1종당)	법 제175조제6항제11호	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용기 및 포장에 담는 방법으로 양도·제공하는 자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양도·제공받은 사업장 1개소당)	50	100	300

		나)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 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주 가 용기에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50	100	300
		다) 종전의 물질안전보건 자료대상물질 양도·제 공자로부터 경고표시를 한 용기 및 포장을 제공 받지 못해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채로 물질안 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 도·제공한 경우(경고표 시를 하지 않고 양도· 제공받은 사업장 1개소 당)	10	20	50
		라) 용기 및 포장의 경고표 시가 제거되거나 경고표 시의 내용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경 우	10	20	50
		2)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을 용기 및 포장에 담는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양 도·제공하는 자가 경고표 시 기재항목을 적은 자료 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제 공받지 않은 사업장 1개소 당)	50	100	300
치. 법 제119조제1항을 위 반하여 일반석면조사를 하지 않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 체한 경우	법 제175조제6 항제12호		철 거 또 는 해 체 공 사 금액의 100분 의 5에 해당하 는 금 액. 다 만, 해 당 금 액 이	200	300

			10만원 미만인 경우에 는 10 만원으 로, 해 당 금 액 이 100 만 원 을 초과하 는 경 우에는 100 만 원으로 한다.		
키. 법 제119조제2항을 위 반하여 기관석면조사를 하지 않고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 제한 경우	법 제175조제1 항제1호	1) 개인 소유의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 관은 제외한다)	철 거 또 는 해 체 공 사 금액의 100분 의 5에 해당하 는 금 액. 다 만, 해 당 금 액 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 는 50 만원으 로, 해 당금액 이 500 만원을 초과하 는 경 우에는 500 만	1,000	1,500

		2) 그 밖의 경우	원으로 한다. 철거 또는 해체 공사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해당 금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0만원으로 한다.	3,000	5,000
티. 법 제122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관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으로 하여금 석면해체·제거를 하도록 한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호		150	300	500
피. 법 제1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석면해체·제거작업을 고용노동부장관	법 제175조제6항제13호	1) 신고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2)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	50	100	150

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우			
히. 법 제1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자가 한 조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6항제3호		5	10	15
가. 법 제1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기 중 석면농도가 석면농도기준 이하가 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호		150	300	500
나. 법 제1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기 중 석면농도가 석면농도기준 이하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6항제14호		100	200	300
다. 법 제124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기 중 석면농도가 석면농도기준을 초과함에도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경우	법 제175조제1항제2호		1,500	3,000	5,000
라. 법 제125조제1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4항제6호	측정대상 작업장의 근로자 1명당	20	50	100
마. 법 제125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작업환경측정 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작업환경측정의 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3호		100	300	500
바. 법 제125조제4항을 위반하여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대표가 요구하였는 데도 근로자대표를 참석시키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4호		500	500	500
샤. 법 제125조제5항을 위반하여 작업환경측정 결과	법 제175조제6항제15호	1) 보고하지 않은 경우	50	150	300

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2)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00	300	300
야. 법 제125조제6항을 위 반하여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 로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 항제15호		100	300	500
자. 법 제125조제7항을 위 반하여 산업안전보건위 원회 또는 근로자대표 가 작업환경측정 결과 에 대한 설명회의 개최 를 요구했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 항제1호		100	300	500
차. 법 제129조제1항 또는 제130조제1항부터 제3 항까지의 규정을 위반 하여 근로자의 건강진 단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4 항제7호	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1명당	10	20	30
카. 법 제132조제1항을 위 반하여 건강진단을 할 때 근로자대표가 요구 하였는 데도 근로자대 표를 참석시키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 항제14호		500	500	500
타. 법 제132조제2항 전단 을 위반하여 산업안전 보건위원회 또는 근로 자대표가 건강진단 결 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 했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 항제1호		100	300	500
파. 법 제132조제3항을 위 반하여 건강진단 결과 를 근로자 건강 보호 및 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법 제175조제6 항제3호		300	300	300
하. 법 제132조제5항을 위 반하여 조치결과를 제 출하지 않거나 거짓으	법 제175조제6 항제15호	1) 제출하지 않은 경우	50	150	300
		2)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300	300	300

로 제출한 경우					
거. 법 제133조를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6항제3호		5	10	15
너. 법 제134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의 실시결과를 통보·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보고한 경우	법 제175조제6항제15호	1) 통보 또는 보고하지 않은 경우	50	150	300
		2) 거짓으로 통보 또는 보고한 경우	300	300	300
더. 법 제134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의 실시결과를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법 제175조제6항제15호	1) 통보하지 않은 경우	50	150	300
		2)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300	300	300
러. 법 제137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강관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호		500	500	500
며. 법 제1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법 제175조제3항제3호	1) 사업주가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1,500	1,500	1,500
		2) 근로자가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5	10	15
버. 법 제141조제3항을 위반하여 역학조사 참석이 허용된 사람의 역학조사 참석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법 제175조제3항제4호		1,500	1,500	1,500
서. 법 제145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 없이 지도사 직무를 시작한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호		150	300	500
요. 법 제149조를 위반하여 지도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175조제6항제3호	1) 등록한 지도사가 아닌 사람이 지도사 명칭을 사용한 경우	100	200	300
		2) 등록한 지도사가 아닌 사람이 지도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30	150	300
조. 법 제155조제1항에 따른 질문에 답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법 제175조제6항제16호		300	300	300

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초. 법 제15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검사·점검 또는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175조제4항제8호		1,000	1,000	1,000
교. 법 제155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출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6호	1)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않은 경우 2)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50 500	300 500	500 500
토. 법 제156조제1항에 따른 검사·지도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175조제6항제17호		300	300	300
표. 법 제164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존해야 할 서류를 보존기간 동안 보존하지 않은 경우(각 서류당)	법 제175조제6항제18호		30	150	300